

# 예 산 총 칙

201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57,032,557	10,710,977
일반회계	291,367,131	8,741,014
특별회계	65,665,426	1,969,963
기타특별회계	65,665,426	1,969,96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14,671	3,440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767,431	23,023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42,130	19,264
새마을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06,493	6,195
수질개선특별회계	42,551,946	1,276,558
주차장사업특별회계	879,400	26,382
도시개발특별회계	1,794,393	53,832
하리1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2,166,000	64,980
천송2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188,462	5,654
법우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1,051,000	31,530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1,000	30
기반시설특별회계	590,000	17,70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356,000	40,68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51,500	10,545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13,005,000	390,15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08,445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3,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무활동 경비
3.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4.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